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2023.04.2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희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INDEX

I



중소기업
승계
지원의
필요성

II



일본
중소기업
승계지원제도
동향

III



국내 현행법
한계점 및
입법 필요성

Chapter I

중소기업 승계 지원의 필요성

- 중소기업 대표자 고령화
- 중소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
- 중소기업 승계 불발시 국가 손실 규모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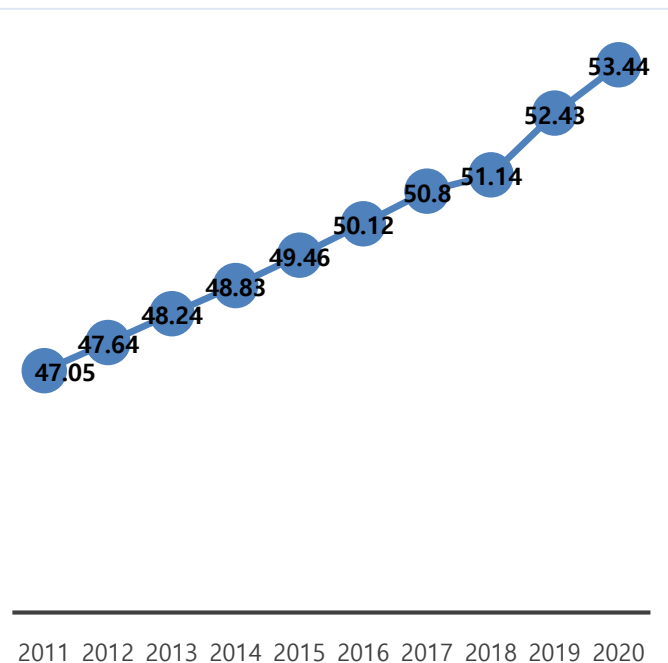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대표자 평균연령은 2020년 53.4세, CAGR(2011-2020) 1.4%
- 업종별 : 건설업 (47.2→54.5세) > 운수 및 창고업 (48.5→55.9세)
- 지역별 : 전남 (46.8→53.8세) > 강원 (47.3→54.2세) > 전북 (46.7→53.5세)

[기업 규모별 대표자 평균연령 추이 (세,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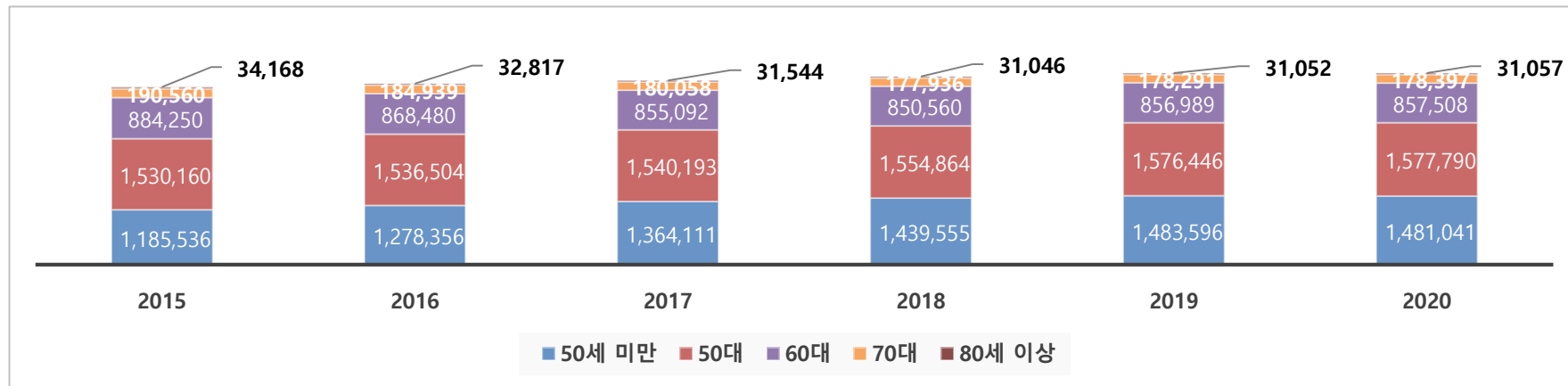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연령 추이 (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대기업	49.87 (1,625)	50.54 (1,565)	50.88 (1,449)	51.63 (1,426)	52.44 (1,449)	53.20 (1,464)	53.98 (1,484)	54.91 (1,502)	55.89 (1,463)	56.90 (1,422)	1.48
중견기업	49.99 (5,448)	50.85 (5,632)	51.75 (5,779)	52.61 (5,918)	53.49 (6,066)	54.45 (6,115)	55.39 (6,127)	56.34 (6,088)	57.34 (6,046)	58.37 (5,937)	1.74
중소기업	47.05 (484,314)	47.64 (517,046)	48.24 (545,655)	48.83 (575,047)	49.46 (602,358)	50.12 (623,789)	50.80 (639,439)	51.14 (646,349)	52.43 (638,076)	53.44 (618,762)	1.42
판단불가	51.77 (2,546)	52.58 (2,685)	53.36 (2,871)	54.10 (3,042)	54.86 (3,182)	55.68 (3,298)	56.62 (3,356)	57.59 (3,365)	58.51 (3,384)	59.56 (3,346)	1.57
전체	49.15 (493,933)	49.85 (526,928)	50.49 (555,755)	51.20 (585,433)	51.94 (613,055)	52.71 (634,666)	53.52 (650,406)	54.38 (657,304)	55.32 (648,969)	56.34 (629,467)	1.53



» 중소기업 대표자의 25.9%가 60대 이상, 80세 이상인 사업체 수는 약 31,057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추이(개사)]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비중 추이(%)]

연령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0세 미만	31.00	32.77	34.35	35.51	35.95	35.90
50-54세	20.17	20.01	19.84	19.71	19.67	19.68
55-59세	19.84	19.38	18.95	18.65	18.54	18.56
60-64세	15.46	14.94	14.48	14.13	13.99	14.01
65-69세	7.66	7.32	7.06	6.85	6.77	6.78
70-74세	3.46	3.30	3.16	3.06	3.02	3.02
75-79세	1.52	1.44	1.38	1.33	1.30	1.30
80세 이상	0.89	0.84	0.79	0.77	0.75	0.75

업력이 길수록 높은 사회적 성과 창출

• 피보험자 수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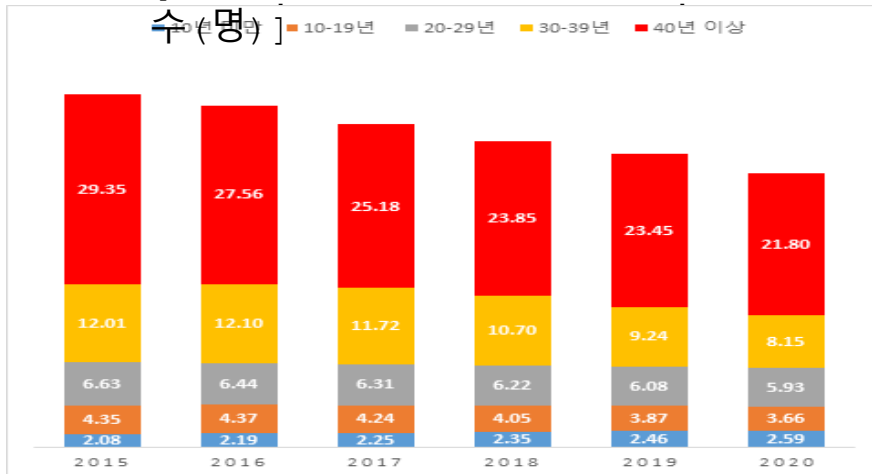
- 40년 이상인 사업체(32,315개사, 0.8% 비중) : 약 757,808명(비중 3.0%), CAGR(2015-2019) 12.4%,
- 1사업체 당 피보험자 수 : 40년 이상 (23.5명) > 30-39년 (9.2명) > 20-29년 (6.1명) > 10-19년 (3.9명)

• 총 급여지급액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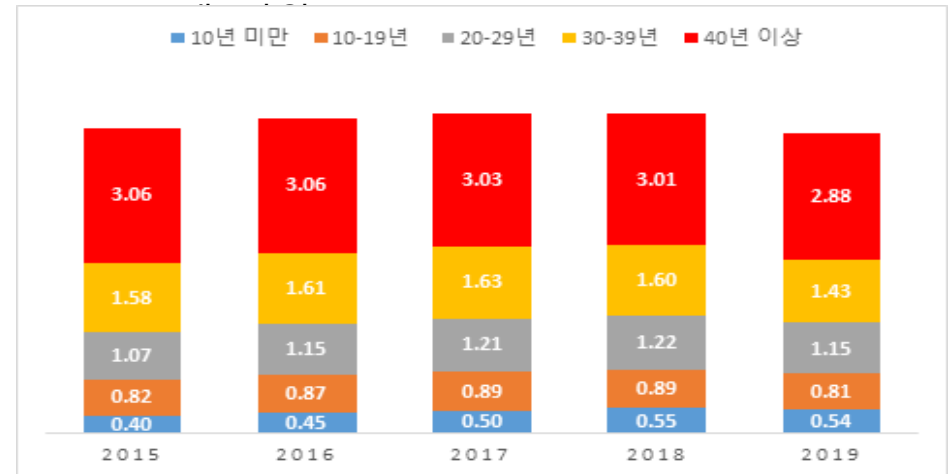
- 40년 이상인 사업체(32,315개사, 0.8% 비중) : 약 9조 3,128억원(1.7% 비중), CAGR(2015-2019) 17.1%

- 1사업체 당 급여지급액 : 40년 이상 (2.9억원) > 30-39년 (1.4억) > 20-29년 (0.8억) > 10-19년 (0.45억)

[업력별 중소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명)]



[업력별 중소기업 평균 급여지급액]



» 업력이 길수록 높은 재무적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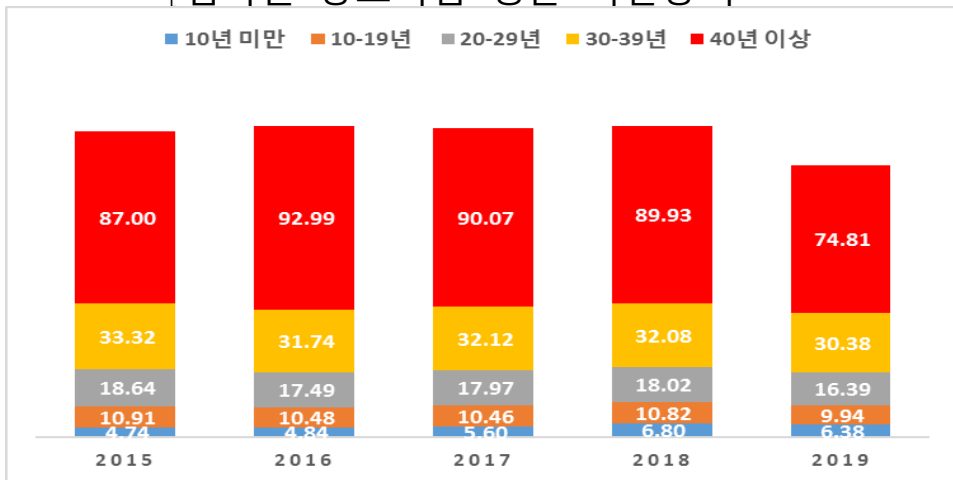
• 자산총액 (2019년 기준)

- 40년 이상인 사업체(32,315개사): 약 241조 7,341억원(5.9% 비중), CAGR(2015-2019) 14.5%
- 1사업체 당 자산총액 : 40년 이상 (74.8억원) > 30-39년 (30.4억)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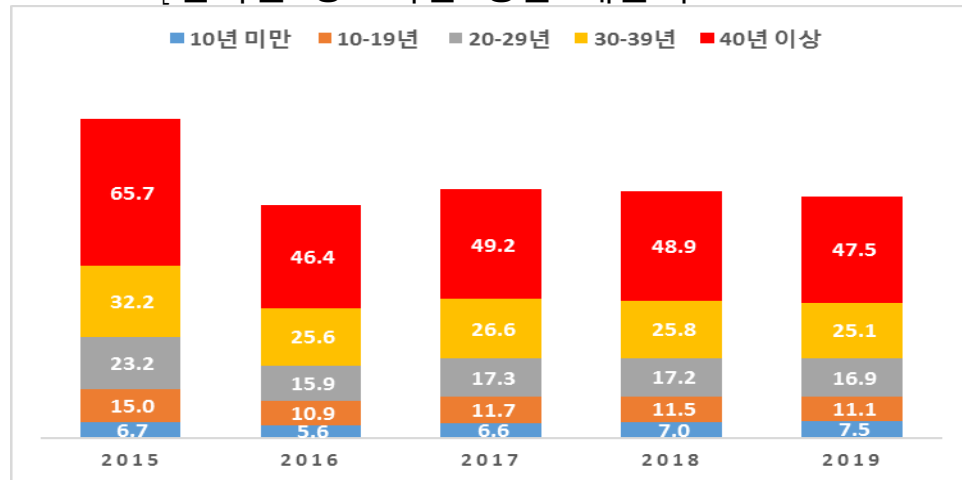
• 매출액 (2019년 기준)

- 40년 이상인 사업체 (32,315개사): 약 153조 5,4151억원(3.5%의 비중), CAGR(2015-2019) 9.7%
- 1사업체 당 매출액 : 40년 이상 (47.5억원) > 30-39년 (25.1억) > 20-29년 (16.9억)

「업력별 중소기업 평균 자산총액



「업력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 업력이 길수록 높은 재무적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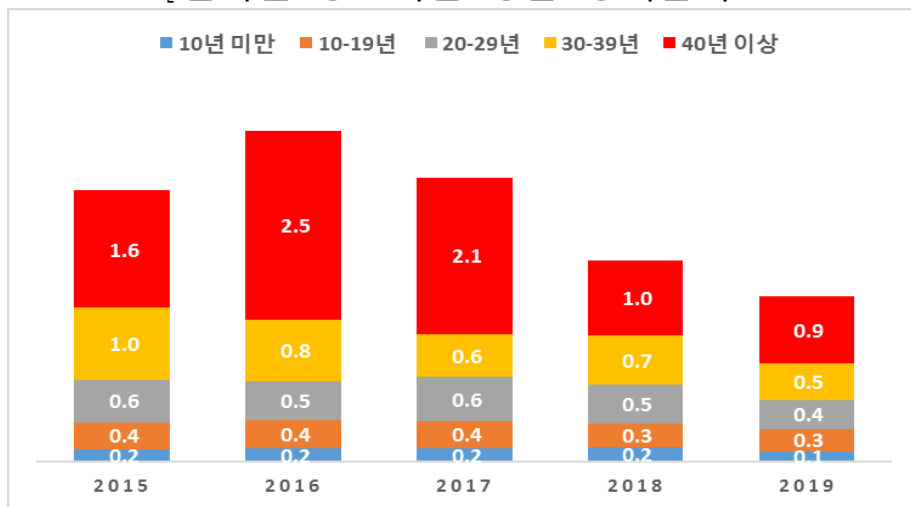
• 당기순이익 (2019년 기준)

- 40년 이상인 사업체(32,315개사): 약 2조 9,081억원(2.9%의 비중), CAGR(2015-2019) 3.5%
- 1사업체 당 당기순이익 : 40년 이상 (0.9억원) > 30-39년 (0.5억)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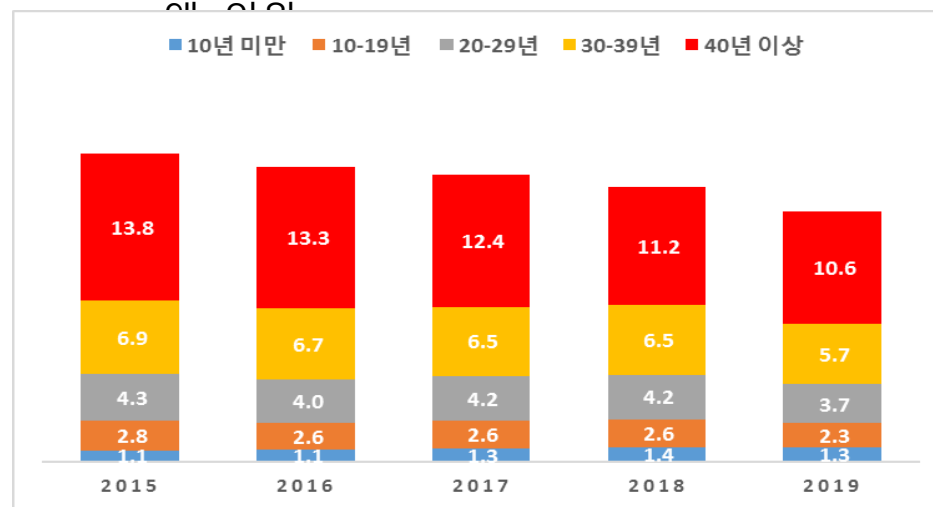
• 부가가치액 (2019년 기준)

- 40년 이상인 사업체(32,315개사): 약 34조 2,614억원(3.9%의 비중), CAGR(2015-2019) 11.3%
- 1사업체 당 부가가치액 : 40년 이상 (10.6억원) > 30-39년 (5.7억) > 20-

[업력별 중소기업 평균 당기순이익 (2015-2019년 기준)]



[업력별 중소기업 평균 부가가치 (2015-2019년 기준)]



» 업력이 길수록 높은 경제적/기술적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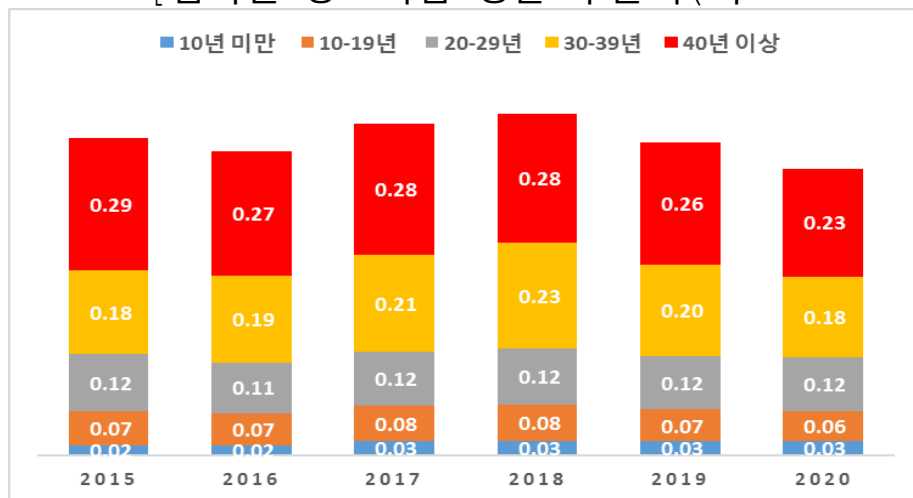
• 수출액 (2019년 기준)

- 40년 이상인 사업체 (32,315개사): 약 85억 300만 달러(1.4%의 비중), CAGR(2015-2019) 16.5%
- 1사업체 당 수출액 : 40년 이상 (26만달러) > 30-39년 (20만달러)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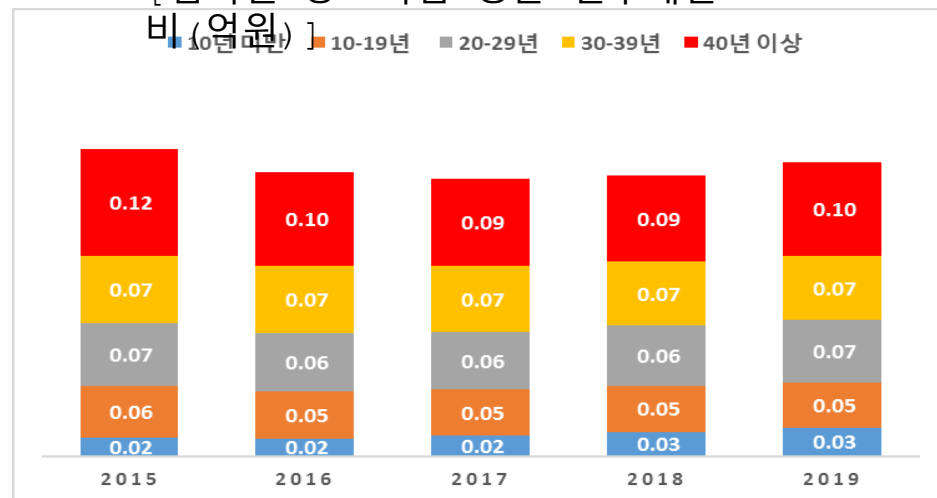
• 연구개발비 (2019년 기준)

- 40년 이상인 사업체(32,315개사): 약 3,282억원(1.8%의 비중), CAGR(2015-2019) 14.9%
- 1사업체 당 연구개발비: 40년 이상 (1천만원) > 30-39년 (690만원) > 20-29년 (680만원)

[업력별 중소기업 평균 수출액 (백만달러)]



[업력별 중소기업 평균 연구개발비 (억원)]



»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사회적 손실 규모 추정

- 기대수명이 83.3세 (2019년) 점에 근거해 승계 불발시 80세 이상인 사업체들은 모두 소멸될 것으로 가정
- 대표자 연령대를 5세 단위로 구분명 총계 불발되었을 경우의 손실규모를 시계열로 추정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성	77.26	77.57	78.12	78.58	78.96	79.30	79.70	79.70	80.30
여성	83.97	84.17	84.60	85.02	85.17	85.40	85.70	85.70	86.30
계	80.62	80.87	81.36	81.80	82.06	82.40	82.70	82.70	83.30

주: 통계청 「생명표, 국가승인통계 제101035호」

-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인해 한계점
 - 80세 이상인 사업체들 중 청산하지 않고 매각하여 존속하는 경우가 존재
 - 80세 이상인 사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이 재취업하는 경우가 존재

사업체 수 및 피보험자 수 손실 규모

-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체 수는 약 31,052개사(2019년)으로 추정
-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총 실직자 수는 약 568,804명(2019년)으로
[승계 불발시 손실 사업체 수 (개) [승계 불발시 손실 피보험자 수 (명)]

시점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현재	31,052	31,057
5년 후	115,908	115,891
10년 후	325,251	325,345
15년 후	814,155	814,348
20년 후	1,880,486	1,881,310
25년 후	3,711,749	3,714,010
30년 후	6,354,527	6,358,762
35년 후	10,480,901	10,484,555

시점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현재	568,804	561,775
5년 후	1,438,678	1,397,445
10년 후	3,070,967	2,990,447
15년 후	6,342,066	6,188,968
20년 후	12,317,834	12,120,176
25년 후	19,643,456	19,444,589
30년 후	25,997,809	25,853,202
35년 후	35,565,598	35,814,876

자산총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손실 규모

-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산총액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238조 293억원으로 추정
-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137조 9,652억원으로 추정

승계 불발시 손실 자산총액(억 원)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산총액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238조 293억원으로 추정]

시점	2019년 기준
현재	2,380,293
5년 후	5,395,631
10년 후	10,484,637
15년 후	20,321,686
20년 후	38,400,510
25년 후	60,021,662
30년 후	78,588,037
35년 후	105,408,841

승계 불발시 손실 매출액(억 원)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137조 9,652억원으로 추정]

시점	2019년 기준
현재	1,379,652
5년 후	3,544,037
10년 후	7,943,627
15년 후	16,812,732
20년 후	33,796,612
25년 후	54,801,208
30년 후	74,023,905
35년 후	103,901,743

승계 불발시 손실 부가가치액(억 원)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가가치액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137조 9,652억원으로 추정]

시점	2019년 기준
현재	346,376
5년 후	892,325
10년 후	1,913,177
15년 후	4,003,238
20년 후	7,925,764
25년 후	12,557,820
30년 후	16,631,717
35년 후	22,502,119

수출액 및 연구개발비 손실 규모

-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출액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116억 1,100만달러로 추정
-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적 손실 규모는 약 4,563억 원

[승계 불발시 손실 수출액 (백만달러)]

시점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현재	11,611	10,935
5년 후	26,420	25,385
10년 후	55,073	52,477
15년 후	112,734	103,737
20년 후	225,412	218,072
25년 후	359,914	373,715
30년 후	466,030	475,591
35년 후	605,448	619,553

[승계 불발시 손실 연구개발비 (백만원)]

시점	2019년 기준
현재	4,563
5년 후	12,612
10년 후	26,860
15년 후	57,379
20년 후	131,608
25년 후	229,701
30년 후	317,035
35년 후	454,092

» 기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영속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

- 전통적인 기술, 인력 등 대대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고유한 차별성과 독특성 유지

카네이션(400년간 존속하고 있는 일본 간장제조업체) : 기업의 이념과 사풍은 그대로 계승하는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대를 이어 끊임없는 혁신과 차별화를 통해 신시장 개척

- 장수기업 토대 육성, 핵심기술 끊임없이 비즈니스화함으로써 독보적 경쟁력 유지 가능

➤ 일본 200년 이상 지속경영하고 있는 기업 3,300여개 vs. 한국 100년 이상 존속 기업 7개 불가

➤ 일본 소부장기업의 경우 여러 세대에 걸쳐 핵심역량을 축적, 끊임없는 다나카금속그룹(순금 세션으로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 1세대 전당포에서 시작해 부품(배금선) 개발로 전환 → 2세대 산업용 수요를 개발해 통산 및 전자교환기 부품(금속세션)을 확대 → 3세대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 전반으로 수요 확대(초 정밀 금극세선) → 4세대 다각화를 통해 바이오, 태양에너지 염료 등의 분야로 진출

》 기업 승계는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

- 선진국의 경우 기업승계를 '기술, 경영, 사회적 공헌의 대물림'으로 보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 세대를 이어 존속·성장하고 있는 해외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 중소기업의 영위기간이 짧아 불특정 다수에게 고용창출 능력과 경영성과가 높게 확인 수행
 - 승계 불발시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일자리 등이 상실되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의 모색 필요

- 우리나라 승계지원제도는 세제지원에 국한
- 축적된 경영노하우, 기술, 고용 등의 이전을 통한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 중소기업 승계문제를 제2의 창업으로 바라보는 획기적인 시각의 전환 필요
- 지원 목적에 입각해 고용·경영안정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Chapter II

일본 중소기업 승계지원제도 동향

- 사업승계 관련 법률
- 사업승계 관련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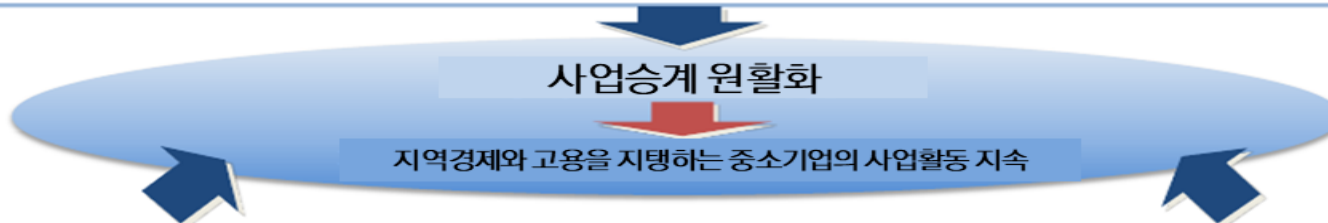
»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2008.10.1 시행)

- 사업승계세제제도,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금융지원제도 등 종합적 마련
 -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 후계자 경영권 유지, 필요한 자금 조달 등 가능

1. 사업승계세제

● 비상장주식에 관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

중소기업의 사업 지속을 통한 고용 확보와 지역경제 활력유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후계자가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선대 경영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증여세의 납세가 유예된다(5년간의 사업 지속 등이 요건).



2. 민법의 특례

후계자가 유류분 권리자 전원과의 합의 및 소요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이하의 민법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 ① 생전 증여주식 등을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
증여주식이 유류분 감쇄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에 따른 주식분산을 미연에 방지
- ➡ ② 생전 증여주식 등의 평가액 미리 고정
후계자의 공헌에 의한 주식가치 상승분이 유류분 감쇄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영의욕이 저해되지 않는다.

3. 금융지원

경영자의 사망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 및 그 대표자에 대해, 이하의 특례를 조치

- ①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 ②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법의 특례

➡ 친족 외 승계나 개인사업주의 사업승계를 포함해, 폭넓은 자금요구에 대응

»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한 종합적 지원 : 사업승계세제

- 법인판 사업승계세제 : 10년간 납세 유예·면제하는 특례조치 창설 (2018.04.01)
 - 대상 주식 수 상한선 철폐, 유예비율 100%로 확대
 - 고용유지가 5년간 평균 80% 미달되어도 유예 계속 가능

구 분	2018년 이후 (특별조치)	2018년 이전
사전계획제출	5년 이내(2018년 4월~2022년 3월) 특례승계계획 제출	불요
적용기한	10년 (2018~2027년)	없음
대상주식 수	전부	주식의 3분의2
납세유예비율	100%	상속: 80%, 증여: 100%
승계패턴	최대 3인의 후계자	1인의 후계자
고용확보요건	탄력화(예외 사유 인정) ¹⁾	승계 후 5년간 평균 80% 유지
상속세 납부 면제	있음 ²⁾	없음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	60세 이상 피상속인이 20세 이상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주 : 1) 회사의 대표권이 없어진 경우 등

2) ①후계자가 사망한 경우, ②(특례) 경영승계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회사의 대표권이 없어진 경우, ③(특례) 경영승계기간 경과 후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④(특례) 경영승계기간 경과 후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양도·해산한 경우

»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한 종합적 지원 : 사업승계세제

- 개인판 사업승계세제 : 10년간 납세 유예·면제하는 특례조치 창설 (2019.04.01)

① 다양한 사업용 자산이 대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용 자산이 대상 - 토지·건물 (토지는 ㎡, 건물은 ㎡까지) - 기계·기구·비품 (예) 공작기계·파워소벨·진료기기 등 - 차량 및 운반 장비 - 생물 (젓소 등, 과수 등) - 무형상각자산 (특허권 등) 등 	②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도 대상 생전 증여에 따른 조기 사업승계 준비 지원 ③ 납세액의 전액(100%)이 납세 유예 후계자 승계 시 현금부담 0으로 ④ 10년간의 시한 조치 2019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속증여 대상
--	--

주1: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경영승계원활화법에 따른 인정이 필요
② 2019년도부터 5년 이내에 미리 승계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주 2: 기존 사업용 소규모 택지 특례와의 선택제

- 개인판 사업승계세제와 소규모 택지 특례 선택 적용
- 소규모 택지 특례: 상속에 의한 토지외의 사업용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최대 400㎡까지 80% 감액), 친족으로의 승계만 인정
- 유예된 세금은 후계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다음 후계자에게 넘겨준 경우, 승계한 후계자가 중증 장애로 사업 계속이 곤란해진 경우 등 면제

»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한 종합적 지원 :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 피상속인이 사망 5년 이내에 증여한 주식지분은 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
 - 상속에 따른 주식분산 미연에 방지, 후계자에게 자산 집중
- 후계자 노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 생전에 증여한 주식 등의 평가액을 미리 고정, 후계자의 경영의욕 저하 방지

»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한 종합적 지원 : 금융지원

- 승계 후 분산된 주식 또는 자산의 매입 자금, 상속세 납부자금 등 지원
- 신용보증협회 보증 확대, 정책금융기관 대출지원 강화
- 향후 다른 중소기업자의 경영을 승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2018.07 신설)
 - M&A 등을 통해 타사 주식 및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등 지원
- 인정일로부터 경영승계일까지 현 경영자 보증이 붙어있는 차입을 다시 빌리기 위한 자금 (2020.10 신설)

» 사업승계 보조금

- 친족 내 승계 등에 의한 경영자 교체 (보조상한 : 최대 500만엔, 보조율 : 1/2)
- M&A에 의한 사업 재편·통합 (보조상한 : 최대 1,200만엔, 보조율 : 1/2 또는 2/3)

» 사업승계 지원사업

- 중소기업 재생지원·사업인계지원사업
 - 후계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각 도도부현 (2021.4월 기준 47개)의 각 인정지원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인계지원센터'에서 창업 희망자-사업주 매칭, M&A 등에 대한 정보, 조언 등 제공
- 경영자원 인수·사업재편지원사업 (경영자원 인수 보조금)
 - 제3자 승계시 사업전문가 활용에 관한 비용, 경영자원의 일부를 인계받을 경우 양도측의 폐업비용 지원
 - 사업 재편·통합 시 관계된 등록면허세·부동산 취득세를 경감

» 사업승계 지원사업

- 사업승계·세대교체 집중지원사업(푸시형 사업승계 지원 고도화 사업)
 - 조기·계획적인 사업승계 준비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각 도부현의 지역 내 금융기관이나 상공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업승계 네트워크에서 사업승계 요구를 발굴
 - 사업승계 시 경영자 보증 해제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충족상황 확인과 눈높이 지원 등을 실시
- 사업승계·세대교체 집중지원사업(사업승계 보조금)
 - 조기·계획적인 사업승계·세대교체를 계기로 경영혁신 및 사업전환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설비투자, 판로확대, 기존사업 폐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벤처형 사업 승계·제2 창업 지원(가업인 경영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경우 신제품 개발, 업태 전환,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Chapter III

국내 현행법 한계점 및 입법 필요성



»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중소기업자 및 가업승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

-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제1조)

- 중소기업자의 정의 규정 (제2조 제1호)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③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임

- 가업승계 정의 (제2조 제10호)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7절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2007.12.27)

- 가업승계지원 (제62조의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3),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4),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62조의5),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의 취소 (제62조의6)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2조의 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본은 「경영승계원활화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도모

- 민법상 유류분 특례 규정
- 상속·증여세 납세유예 특례조치 등의 전제가 되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 및 금융지원

목차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목적 - 정의
제2장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제3조-제11조)	- 정의 - 회사사업 후계자가 취득한 주식 등 또는 개인사업 후계자가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관한 유류분 산정에 관한 합의 등 - 회사사업 후계자가 취득한 주식 등 이외의 재산 또는 개인사업 후계자가 취득한 사업용 자산 이외의 재산에 관한 유류분 산정에 관한 합의 - 추정상속인과 회사사업 후계자 또는 개인사업 후계자 간의 형평 및 추정상속인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합의 - 경제산업대신의 확인 - 가정재판소의 허가 - 합의의 효력 - 합의 효력의 소멸
제3장 지원조치 (제12조-제15조)	- 경제산업대신의 인정 -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법의 특례 - 지도 및 조언 등
제4장 잡칙 (제16조-제17조)	-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 권한의 위임

» 「경영승계원활화법」상의 중소기업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르게 규정

- 개별 업종 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경영승계 지원(동법 시행령 제1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 : (공업·광업·운송업 등)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도매업)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소매업)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산업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근로자 수
1	고무 제품 제조 산업(자동차 또는 항공기 타이어 및 튜브 제조 및 산업용 벨트 제조 제외))	3억엔	900명
2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또는 정보 처리 서비스 사업	3억엔	300명
3	료칸 사업	5천만엔	200명

» 우리나라도 승계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 승계 지원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지 못하여 별도의 입법 추진의 필요
 - 동법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제1조)을 고려할 때,
 -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종합계획 등 정책수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원 목적에 입각해 경영안정성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의 (가칭)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승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할 필요
- 제 2의 창업이라는 시각으로 전환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률적 지원 근거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승계와 관련된 비용은 창업 시 투입되는 자금보다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금융지원 등에 관한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필요

감사합니다
